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(제 회)	

어 선 원 및 어 선 재 해 보 상 보 험 법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어선원·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이 개정(법률 제17043호, ‘20.2.18.공포, 8.19.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어선원보험 가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료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금 최대한도를 다른 국가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고, 보상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근거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코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등의 납부(안 제28조의3 신설)

-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금융결제원 및 업무수행능력,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수협중앙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함
- 납부대행기관은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

나. 어선원보험료 등 연체료 부과기준 개정(안 제30조 개정)

산재보험 등 다른 국가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체료 최대한도를 5.0%로 인하하기 위하여 연체료 부과기준을 개정함

다. 민감정보 처리근거 신설(안 제51조의5 개정)

- 보상업무 처리를 위하여 재해어선원의 병명, 기왕증 등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
- 재해어선원의 신원확인을 위해 기존에 활용 중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등에 추가하여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3(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)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"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(이하 "신용카드등"이라 한다)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
2. 법 제9조제2호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가 시설, 업무수행 능력,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

②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중앙회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.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중앙회는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30조 제1항 중 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체금을 징수한다.”를 “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체납금액의

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계산식을 삭제한다.

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체납된 어선원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.

제51조의5의 제목을 “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”로 하고, 같은 항목 하의 부분 중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영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험료 등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8조3(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) ① 법 제41조의 4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"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(이하 "신용카드등"이라 한다)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. 법 제9조제2호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중앙회가 시설, 업무수행능력,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 ②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중앙회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.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 ③ 중앙회는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

제30조(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)

① 중앙회는 법 제43조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 등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체금을 징수한다.

$$\text{체납된금액} \times \frac{96}{1000} \times \frac{1}{365} \times \text{체납일수}$$

<신 설>

② (3항으로 변경)

제51조의5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

정할 수 있다.

제30조(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)

① -----

-----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체납된 어선원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1조의5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

<u>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 1.~16.(생략)	<u>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-----</u> -----. 1.~16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0-5468